

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 312 호 |
| 의 결 연 월 일 | 2012년 4월 일 (제 308 회) |

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|
| 발 의 자 | 김양희 의원외 6명 |
| 발의연월일 | 2012년 4월 9일 |

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양희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발의연월일 : 2012년 4월 9일

발 의 자 : 김양희, 최병운, 김영주
박종성, 유완백, 정지숙
황규철

제정이유

- 2000년 제정·운영되고 있는 「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지역의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「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」로 통·폐합하여 입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,
- 관광산업의 국제화와 전문화에 능동적 대응하고 외국인 관광객 및 외국 자본 유치 증진을 통한 충북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치 성공 보상금을 도입하여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조례의 제명

- 조례의 제명을 “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”로 명확히 함.

나.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수행하는 업무를 정함(안 제10조 및 부

칙 제2조)

- 관광안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정하고,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도지사가 관광안내소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.
- 관광안내소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서 규정함에 따라 「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폐지함.

다.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국 관광기업·자본 유치 증진을 위해 유치 성공 보상금제 도입(안 제11조)

- 충북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치 성공 보상금을 도입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관광환경국 관광항공과와 협의함.

나. 예산조치 : 예산추계서 붙임.

다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.

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”로 한다

제2조제5호 중 “외국인관광객”을 “외국인 관광객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지원을 할 수 있다”를 “지원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9조 중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충청북도관광안내소 설치·운영

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12조부터 제14조로 하고, 제10조와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관광안내소) ① 도지사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와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관광안내소(이하 “관광안내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관광안내소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.

③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
2. 관광 홍보에 관한사항
3.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 전시·판매
4. 관광홍보물 제작·배포
5.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·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
6. 국내·외 관광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

7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

제11조(외국인 관광객유치 성공 보상) ① 도지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국 관광기업·자본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, 공무원 및 단체,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“관광전세기”란 국내·국외여행사에서 <u>외국인관광객</u> 모객을 위해 임차하는 전세편 운항을 말한다.</p> <p>6. ~ 8. (생략)</p> <p>제4조(관광객유치 지원 등) ① 도지사는 사업자단체 또는 여행사가 도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<u>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9조(대상업무) ① 제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(신설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(생략)</p> 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“관광전세기”란 국내·국외여행사에서 <u>외국인 관광객</u> 모객을 위해 임차하는 전세편 운항을 말한다.</p> <p>6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관광객유치 지원 등) ① 도지사는 사업자단체 또는 여행사가 도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<u>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대상업무) ① 제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<u>1. 충청북도관광안내소 설치·운영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---|---|
| (신설) | <p>제10조(관광안내소) ① 도지사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와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관광안내소(이하 “관광안내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도지사가 관광안내소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.</p> <p>③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 2. 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3.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 전시·판매 4. 관광홍보물 제작·배포 5.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·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. 국내·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7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(신설)</p> | <p>제11조(외국인 관광객유치 성공 보상) ① 도지사는 외국인 관광객유치 및 외국 관광기업·자본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, 공무원 및 단체,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|
| <p>제10조 (생략)</p> | <p>제12조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1조 (생략)</p> | <p>제13조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2조 (생략)</p> | <p>제14조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| <p>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.</p> |

관계법령 발췌

□ 관광진흥법

제41조(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) ①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3조(업무)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
2.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·연구 및 홍보
3. 관광 통계
4.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
5. 회원의 공제사업
6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7. 관광안내소의 운영
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

제44조(「민법」의 준용)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(社團法人)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, 관광 홍보물의

제작,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.

제76조(재정지원)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,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재정수반 요인

○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국 관광기업·자본유치 성공 보상(안 제11조)

본 조례안은 도지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국 관광기업·자본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, 공무원 및 단체,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(안 제11조).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개정조례안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국 관광기업·자본유치 성공 보상은 기업유치 보상을 기초로 하여 추계하고자 한다.

3. 비용추계의 결과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상의 포상금제 현황을 보면

○ 외국인투자 기업유치

| 투자유치금액 | 지급기준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1,000만불 미만 | 투자유치금액의 0.1% |
| ②1,000만불이상~5,000만불 미만 | ①+1,000만불 초과액의 0.05% |
| ③5,000만불이상 ~ 1억불 미만 | ①+②+5,000만불 초과분의 0.01% |
| ④1억불 이상 | ①+②+③+1억불 이상 초과분의 0.005% |

○ 공무원

| 투자유치금액 | 지급기준율 | 상한액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50억~100억미만 | 투자금액의 0.01% | 100만원 |
| 100억~500억미만 | 100만원+(투자금액-100억)×0.00005 | 300만원 |
| 500억~1,000억미만 | 300만원+(투자금액-500억)×0.00004 | 500만원 |
| 1,000억~3,000억미만 | 500만원+(투자금액-1,000억)×0.000025 | 1,000만원 |
| 3,000억~5,000억미만 | 1,000만원+(투자금액-3,000억)×0.00005 | 2,000만원 |
| 5,000억 이상 | 2,000만원+(투자금액-5,000억)×0.00002 | 3,000만원 |

이를 기초로 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국 관광기업·자본 유치 포상을 산출하며

○ 외국인투자 기업유치

| 투자유치금액 | 지급기준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1,000만불이상~5,000만불 미만 | 1,000만불 초과액의 0.05% |
| ②5,000만불이상 ~ 1억불 미만 | ①+②+5,000만불 초과분의 0.01% |
| ③1억불 이상 | ①+②+1억불 이상 초과분의 0.005% |

○ 공무원

| 투자유치금액 | 지급기준율 | 상한액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100억~500억미만 | 100만원+(투자금액-100억)×0.00005 | 300만원 |
| 500억~1,000억미만 | 300만원+(투자금액-500억)×0.00004 | 500만원 |
| 1,000억~3,000억미만 | 500만원+(투자금액-1,000억)×0.000025 | 1,000만원 |
| 3,000억~5,000억미만 | 1,000만원+(투자금액-3,000억)×0.00005 | 2,000만원 |
| 5,000억 이상 | 2,000만원+(투자금액-5,000억)×0.00002 | 3,000만원 |

○ 공무원

| 관광객 유치금액 | 지급 산출액 | 상한액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30,000명 | 분기당 | 200만원 |
| 30,000명~50,000명미만 | 분기당 | 400만원 |
| 50,000명~100,000명미만 | 반기당 | 1,000만원 |
| 100,000명 이상 | 연 간 | 2,000만원 |

4. 부대의견

없 음.

5. 작성자

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보흠(220-5031)